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76
----------	-------

발의연월일 : 2026. 4. 21.

발 의 자 : 전종덕 · 용혜인 · 정혜경

김 윤 · 윤종오 · 임미애

손 솔 · 김종민 · 이개호

정춘생 · 백선희 · 이주희

장종태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사업보고서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합등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조합장 · 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위법 · 불공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중앙회의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농협중앙회 내부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 기능이 부실하고,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내부 정보공개가 충분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이 조합등의 경력자 중심으로 임명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으로

서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등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조합등의 조합원과 회원 및 농협의 채권자가 대의원회 의사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과 회원은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 나. 중앙회 및 그 자회사 등에서 종사한 사람은 농협중앙회의 준법감시인으로 임면될 수 없음(안 제125조의4).
- 다. 농협중앙회의 회장은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130조).
- 라. 조합감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특수법인 형태로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61조의13부터 제161조의22까지).
- 마. 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안 제172조제4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전단 중 “이사회 의사록”을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을 “지역농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을 거부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로 한다.

제123조제3호 중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를 “임원의”로 한다.

제125조제4항제10호 중 “감사위원후보자”를 “감사후보자”로 한다.

제125조의4제2항 중 “감사위원회에”를 “감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25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제12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감사

제126조제1항 중 “감사위원 5명을”을 “감사 1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위원장은”을 “감사는”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단서 중 “대표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하는”을 “대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업전담대표이
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29조를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사위원은”을
“감사는”으로 한다.

- ①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제131조제4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로, “사업전담
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을 “및”으
로 한다.

제143조부터 제1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1조 후단 중 “로,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
회”로”를 “로”로, “이사·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
원”으로”를 “이사·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로, “이사·감사위원은 제
외한다)”으로,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조합장”은 “회장·사업전담대
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를 “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조합장”은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임원”은 각각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를 “으로”로,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를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장의3(제161조의13부터 제161조의2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농협감사위원회

제161조의13(농협감사위원회 설립) ①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감사·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협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④ 감사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역위원회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61조의14(정관 등) ① 감사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의15(집행간부 등) ① 감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 이내, 부위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보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감사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의16(직무)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

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이 감사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감사위원장을 보좌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부위원장은 감사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61조의17(감사위원장 등의 해임) ① 감사위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부위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의 제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임한다.

③ 부위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해임한다.

제161조의18(업무) 감사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제1호의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161조의19(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감사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 중앙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감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61조의18에 따라 감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1조의20(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감사위원장은 제161조의18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위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감사위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제161조의21(회계·재원 등) ① 감사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감사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제161조의18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산·결산·차입·잉여금의 처리 등 회계 및 재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의22(보고·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업무·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162조제3항 중 “회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72조제4항 본문 중 “6개월”을 각각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협감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농협감사위원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농협감사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농협감사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농협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감사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법감시인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운영의 공개) ①·② (생략)	제65조(운영의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u>이사회 의사록</u> (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 <u>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u> ----- . ----- --.
④ 조합원은 <u>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u>	④ ----- <u>지역농협</u> ----- -----.
⑤ 지역농협은 제4항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u>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u> , 거부하려면 <u>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u>	⑤ ----- <u>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을 거부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u> ----- -----.

⑥ (생 략)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 2. (생 략) 3. <u>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u> 4. · 5. (생 략) 제125조(이사회) ① ~ ③ (생 략)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의결한다. 1. ~ 9. (생 략) 10. 제125조의5제1항에 따라 추 천된 후보자(<u>감사위원후보자</u> 는 제외한다) 선임에 관한 사 항 11. ~ 13. (생 략) ⑤ ~ ⑦ (생 략)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생 략)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 여 <u>감사위원회</u>에 보고하는 사 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 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임원의</u>----- 4. · 5. (현행과 같음) 제125조(이사회)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 1. ~ 9. (현행과 같음) 10. ----- -----<u>감사후보자</u>----- ----- 11. ~ 1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감사에게</u>----- ----- -----.
--	--

③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2. (생략)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② ~ ④ (생략)

제126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

----- 다만, 중

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

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

1. 2. (현행과 같음)

3. 제12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감사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6조(임원) ① -----

----- 감사 1

명을-----.

② -----

감사는-----.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⑤ (생략)

⑥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업무와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한다.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① ----

-----.

-----대표하는-----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전담대표

이사등-----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생 략)

제129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
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
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
며,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
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
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
외한다.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
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
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
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
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
조제7항 중 “감사”는 “감사위
원회”로, “조합장”은 “회장”으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로, 제46조제8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소이사회”로, 제46조제9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1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2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② ~ ⑤ (생략)

⑥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감사는-----
-----.

⑦ ~ ⑪ (생략)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 ③ (생략)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u>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u> 소속된 직원의 승진·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u>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u> 수행한다. ⑤ (생략) ⑥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u>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u>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u>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회원의 업무를</u>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u>----- ----- ----- -----<u>사업전담</u> <u>대표이사등이</u>-----. ⑤ (현행과 같음) ⑥ ----- <u>및</u>----- ----- ----- ----- ----- -----. <삭 제>
---	---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삭 제>

농정(農政)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
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제145조(의결 사항) 조합감사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
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
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책임
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

<삭 제>

<삭 제>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譴責)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
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
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1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
 여는 제15조제2항·제3항, 제17
 조, 제18조, 제20조제2항·제3
 항, 제21조제4항·제5항, 제21
 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
 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제3
 항·제4항, 제29조제1항, 제30
 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
 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
 42조제3항 단서·제4항·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9항·제1
 0항, 제48조제2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
 는 제외한다), 제49조의2, 제50

제161조(준용규정) -----

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제2항제1호·제4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65조,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1호,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 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 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2항 중 “7일 전”은 “10일 전”으로

-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5조제9항 중 “이사”는 “이사·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26조제1항”으로, 제50조제1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조합장”은 “회장·사업전담대표이

-----이사·사업
전담대표이사등”으로-----

-----이사
 는 제외한다)”으로, 제52조제1
 항 및 제6항 중 “조합장”은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

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4조제1항 전단 중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 중 “조합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임원”은 각각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4항 전단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으로, “조합”은 “중앙회”로, 제65조제1항 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8조제3항

로-----

-----으로-----

제3호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

-----.

제5장의3 농협감사위원회

제161조의13(농협감사위원회 설립)

①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감사·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협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④ 감사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역위원회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61조의14(정관 등) ① 감사위

<신 설>

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의15(집행간부 등) ① 감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 이내, 부위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

<신 설>

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감사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과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의16(직무)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이 감사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감사위원장을 보좌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부위원장은 감사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분

<신 설>

장한다.

④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61조의17(감사위원장 등의 해임) ① 감사위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부위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의 제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임한다.

③ 부위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에는 감사위원장이 해임한다.

제161조의18(업무) 감사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제1호의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161조의19(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감사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 중앙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감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61조의18에 따라 감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1조의20(시정명령 및 징계요

구) ① 감사위원장은 제161조의18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위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감사위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제161조의21(회계·재원 등) ① 감사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② 감사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제161조의18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산·결산·차입·잉여금의 처리 등 회계 및 재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의22(보고·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업무·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

제162조(감독) ① · 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회장</u>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72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u>6개월</u>(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u>6개월</u>)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u>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u> 제162조(감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감사위원장</u>-----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72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1년</u>----- ----- -----<u>1년</u>----- -----. ----- ----- ----- -----.
---	--